

제2회 간접비 분쟁 쟁점해설

2016. 3. 16



**공기연장비용
쟁점 해설 및 대응방안**

공기연장비용 쟁점 해설 및 대응방안

2016. 3. 16.

황문환 전문위원 /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Copyright © 2015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 차

1.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3
2. 계약금액조정제도(공기연장 간접비)	7
3. 공공공사 분쟁 사례	58

1.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1.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New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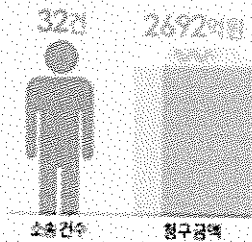
2015. 4. 14. 자 한국경제신문

'슈퍼갑' 공기관... 법에 없는 규정 만들어 시공사에 부담 떠넘겨

설계 바꾸고 공사기간 연장
계약조건 변경 잇따라

공공발주 공사 수익성 악화
산재 위험부실공사 우려
건설사들 소송 적극 진행

공공공사부대비용 소송 현황



* 2012년~2014년 계약발주당 산재 공발기관 대상
자료: 김석호 세무법인 유철촌

공공기관 불공정발주 유형

구분/관행명	내용	발주기관
무단 계약변경 (계약조건/계약금액/계약기간)	설계변경 단거절 하향 적용	도로공사/시정/지방공사
단행 안전관행에 가중 과징금 (안전관리비)	안전 관리 비용 낮춰 적용	시정/지방공사/도로공사/지방공사
노후차량 교체 비용 부담 미흡 (노후차량 교체)	안전비용 설계비 85%가량 적용	한국수력원자력/시정/지방공사
공기/연질 공기 비용 미반영 (공기/연질 공기)	공기연질 추가비용 건설업체에게 전가	도로공사/시정

자료: 유철촌

1.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News2

LH, 수자원공사, 부당지원·부당감액행위 제재 - 공정위

게시일 2015-01-06 3:5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에 부당지원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 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 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 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면서, 2004년부터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 총 2,660억 원을 부담으로 지원했다.

또한 LH는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 1,300만 원을 감액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절감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률 적용해야 함에도, 자기의 '체결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LH의 부당지원행위에 106억 4,300만 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행위에 38억 6,100만 원 등 총 146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4년 기간동안 '주입설 계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일정 비율만을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하여 정당한 대가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렴과정에서,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턴키공사와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총 10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유무

△ 최근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미확정)

이 부분의 우선 쟁점은 국가계약법 제19조가 당사자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지 여부이다. (중략)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강행법규로 해석된다. (중략) 결국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배제특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이 옳다.

➔ 부당특약 O / 무효

2. 계약금액조정제도(공기연장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제도

정부계약 : 목적물(내용), 금액, 기간 약정

계약금액조정 인정 범위

- ① 당초 계약목적물(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② 계약이행기간 중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 ③ 공사이행기간 변경 등의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상기 사유 외 계약금액 조정 불가
(확정계약원칙, 정산항목과 구분)

계약금액 조정제도 (시행령 제64조~제66조)

- 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65조)
-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64조)
- ③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66조)
- ※ 세부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의 의의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문서로써『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행위
 - 입찰형태(방법)에 따른 설계서 인정 범위 확인 필요
- 설계변경은 최적의 공사목적물을 얻기 위한 필요악(必要惡)
 - 시공 전 단계에서 이미 대부분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있음 (설계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가장 많음)
- 설계변경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의미, 구분 필요
- 일반공사와 대형공사 (턴키, 대안) 로 구분(설계서 작성책임)
- 설계변경에 따른 클레임은 문서행위, 절차 준수 등과 밀접한 관련
- 발주기관, 감독(책임감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숙지 필요

계약금액 증액인정 사유 (턴키공사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21)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가능

➡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의 제 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불가항력)

물가변동과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의 의의

1. 물가변동의 의의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이 있는 경우 원가상승 등의 부담을 계약상대자간에 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공사가 원활하게 이행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물가변동 주요내용

조정요건	기간요건(90일이상 경과), 조정을요건(3%이상 등락)
조정율산정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조정기준일	기간요건 및 조정을요건 최초 동시충족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예정분(공사금액)
선금, 기성대가 공제	조정기준일 전,후 선금 및 기성대가 수령 여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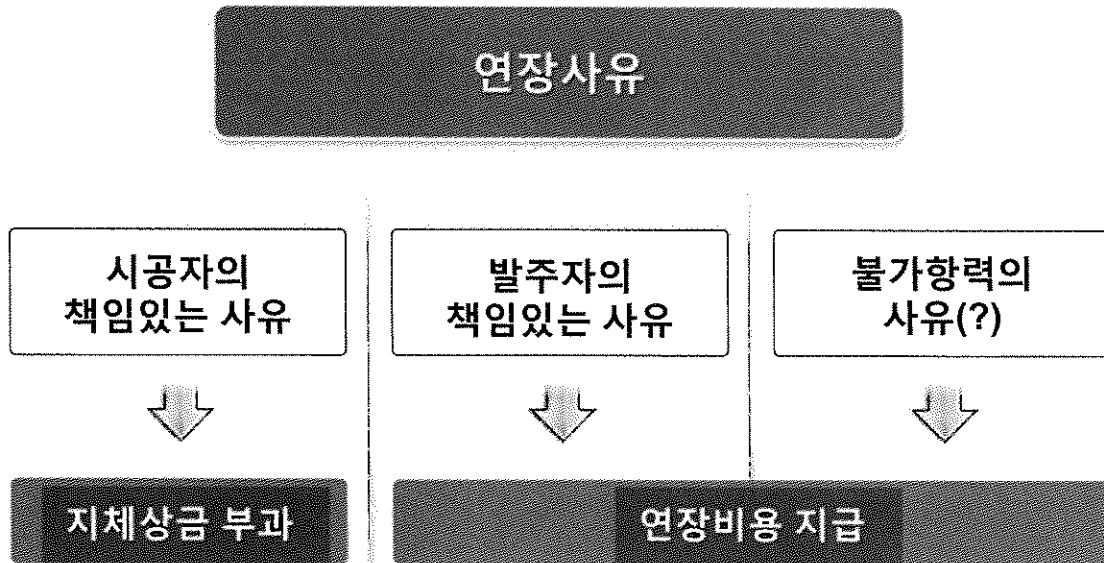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의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모든 계약내용 변경사항 중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제외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말함

- ✓ 토취장·토사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 ✓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 관계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 ✓ 응급조치 소요경비 중 계약상대자 부담이 부담한 경우
-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
- ✓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
- ✓ 발주처의 사정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간접비의 개념

- 공기연장의 발생사유



계약금액 조정

1. 근거규정

- 국가계약법 제19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3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 등

2. 계약금액 조정방법

1) 조정금액 산정방법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
 - ※ 비용산정기준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
-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조정(신청)기한

- 준공대가 수령전(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청구
 - ※ 공사이행기간 연장의 경우 연장 신청시 함께 청구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2006년 5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되고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 계약된 분]
- 발주기관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해야 함 (설계변경 규정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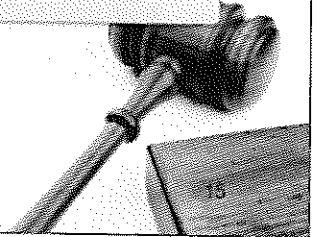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5조(지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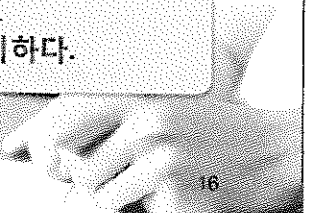
-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산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1 내지 76조에서 규정 (실비 산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간접노무비: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노무비(현장소장,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공무담당, 공사담당, 경비, 경리직원 등)
- 경비 중 지급임차료: 현장사무실 임대료 등
- 경비 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현장사무실 운영비용
-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공사손해보험료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간접노무인력의 근무기간이 늘어나고 현장사무실 유지 및 운영비용이 증가하며 각종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늘어남

실비의 산정

1. 실비산정기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 실비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
- 거래실례가격 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
-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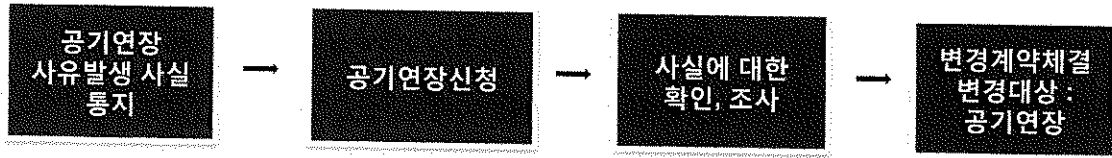
- 간접노무비 :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 × 당해 직종의 단가
-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 :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 직접계상이 불가능한 비목의 실비 :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
- 계약보증금, 공사손해보험료 등 :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간접비 청구 절차와 요건 사례분석

1 간접비 청구 절차와 요건(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사업)

Case 1 입찰공고일이 2006. 5. 25. 이전인 경우

• 공기연장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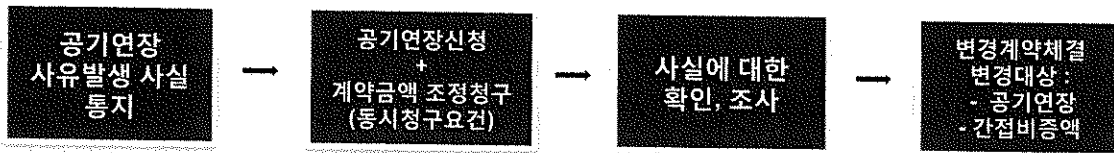
- 계약금액 조정 청구(신청) 시한 :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 차익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 일반조건 제 23조 제1항 단서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한다."

간접비 청구 절차와 요건 사례분석

1 간접비 청구 절차와 요건(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사업)

Case 2 입찰공고일이 2006. 5. 25. - 2010. 11. 30. 이전인 경우

•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청구(신청) 절차 시한



Case 3 입찰공고일이 2010. 11. 30. 이후인 경우

- 공기연장 신청 절차 : case 1과 동일
- 계약금액 조정 청구(신청) 시한 :
 - 장기계속계약 :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계속비계약 : 총공사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다만, 목적을별로 준공시한을 달리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목적을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간접비 청구 절차와 요건 사례분석

2 간접비 청구 절차와 요건(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 사업)

Case 1 입찰공고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

- 공기연장 신청 절차 : 앞의 case 1과 동일
- 계약금액 조정 청구(신청) 시한 : 앞의 case 1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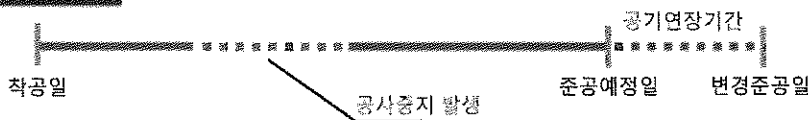
Case 2 입찰공고일이 2012. 3. 14. 이후인 경우

- 공기연장 신청 절차 : 위 case 1과 동일
- 계약금액 조정 청구(신청) 시한 : 앞의 case 3과 동일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례분석

1 공사이행기간 연장 (비용산정)

공기연장 Case 1 당초 계약기간 내 공사중지 발생



- 공사정지기간 동안 투입된 간접비 산정
 - 간접노무비 : 공사정지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된 노무인원 인건비
 - 제정비 : 실발생 지출자료 기준 산정(직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적용)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적용
- 지연보상금 산정
 -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지시 필요)
 - 지연보상금 : 잔여계약금액 × 지연기간 × 대출평균금리 이자률(한국은행)

공사정지기간의 금융손실비용 청구(중재)

발주청은 관급자재 구매지연으로 공사정지를 통보



신청인들은 관급자재 구매지연에 대한 간접비 청구와는 별도로 발주청에 의한 공사정지기간 동안의 금융손실비용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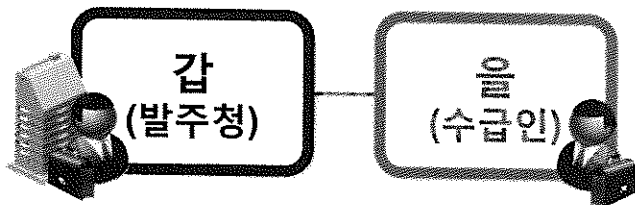
판정 내용

- ①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46조 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금융손실 지급 규정 마련
- ②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정지됨.

▶ 간접비와는 별도로 금융손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공사정지기간의 금융손실비용 관련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2002가합3251 판결



발주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공사의 일시정지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8, 99.9.9)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정지기간의 금융손실비용 관련 판결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정지기간의 금융손실비용 관련 판결

판결 내용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① 공사정지로 인한 공기연장간접비, ② 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근거한 금융손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함

간접비와는 별도로 금융손실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① 발주처에 의한 명시적인 공사정지조치
- ②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여야 함

공사정지기간 관련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35748 판결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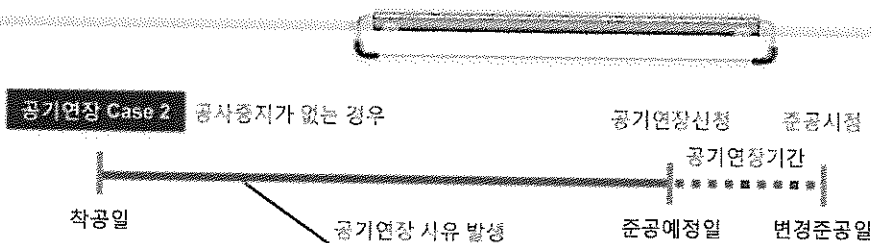
A社와 B발주청은 선행C공사가 지연됨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3차례에 체결하고, 그와 별개로 B청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3차례 일시 정지됨

판결 내용

-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은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 ②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 ③ 위와 같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수행을 위하여 원고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등을 근무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공사정지는 선행공사인 C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B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사가 정지된 기간을 공사기간 연장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례분석

① 공사이행기간 연장 (비용산정)



• 공기연장 신청시점(준공예정일) 비용산정

- 간접노무비 : 공기연장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될 노무인원 기준 산정(계약당사자간 협의 필요)
- 제경비 : 공기연장 이전 최근기간(3~12개월) 지출자료 기준 월 평균금액 산정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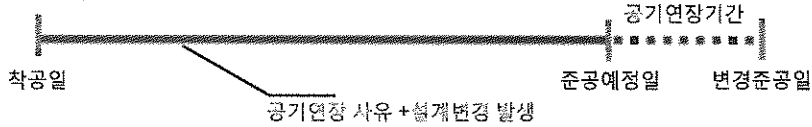
• 준공시점(변경준공일) 비용산정

- 간접노무비 : 공기연장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된 노무인원 인건비
- 제경비 : 실발생 지출자료 기준 산정(직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적용)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적용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례분석

1 공사이행기간 연장 (비용산정)

공기연장 Case 3 공기연장 사유와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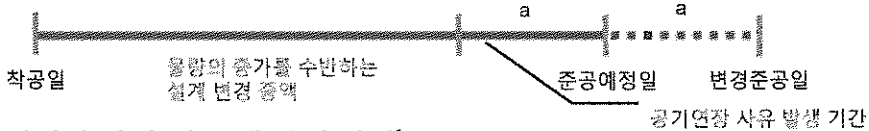


- 증액금액 산정
 - 공기연장 Case 2 동일 산정
 - 공제금액 산정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간접비 산출
 - 공기연장 비용 산정 (설계변경 간섭요인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되었을 경우)
 - 공기연장 비용 = 증액금액 - 공제금액
-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간접비 공제 여부(판결 대립유)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례분석

2 공사이행기간 연장 (연장기간 및 비용산정)

공기연장 Case 1 공기연장과 설계변경 계약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연장기간 산정(및 증액 금액 산정)
 - 공기연장 Case 1 동일산정
- 공제기간 산정
 - 1일당 공사이행금액 = 당초계약금액 / 당초계약일수
 -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장기간 : 설계변경 증액금액 / 1일당 공사이행금액
- 순수 연장기간 산정(및 증액금액 산정)
 -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장기간
 - ❖ 토폰과제 : 물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공제기간을 총 연장기간에서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한 및 간접노무비 산정 사례분석

1 계약금액조정신청 시한(장기계속계약)

• Case 1

- 차수별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각 차수 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청구 조정 신청

• Case 2

- 차수 별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총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or 차수 별 연장기간을 초과하여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총괄계약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 신청

• Cas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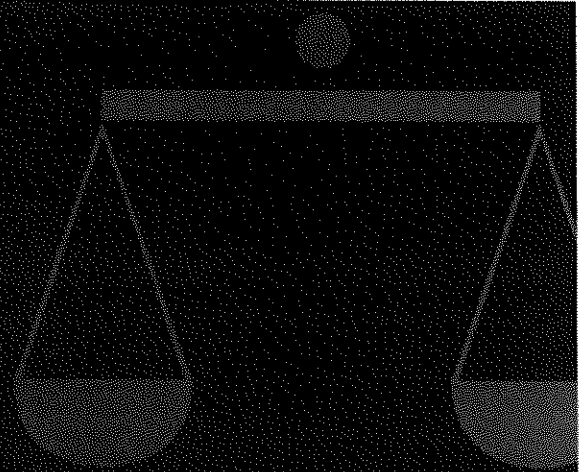
- 휴지기 또는 공백기(차수 별 계약과 차수 별 계약 사이 기간)
현장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원을 배치하고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총 공사기간에 포함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한 및 간접노무비 산정 사례분석

2 간접노무비 액수 산정의 원칙

• Case 1 간접노무비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간접노무인력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처에 사전에 통지(그리하지 아니할 경우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정부분 감액)



간접비 판결 동향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대법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 25, 26조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연장된 기간 전부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 서울지하철 7호선 판결>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인정되고 연장된 총공사기간 전부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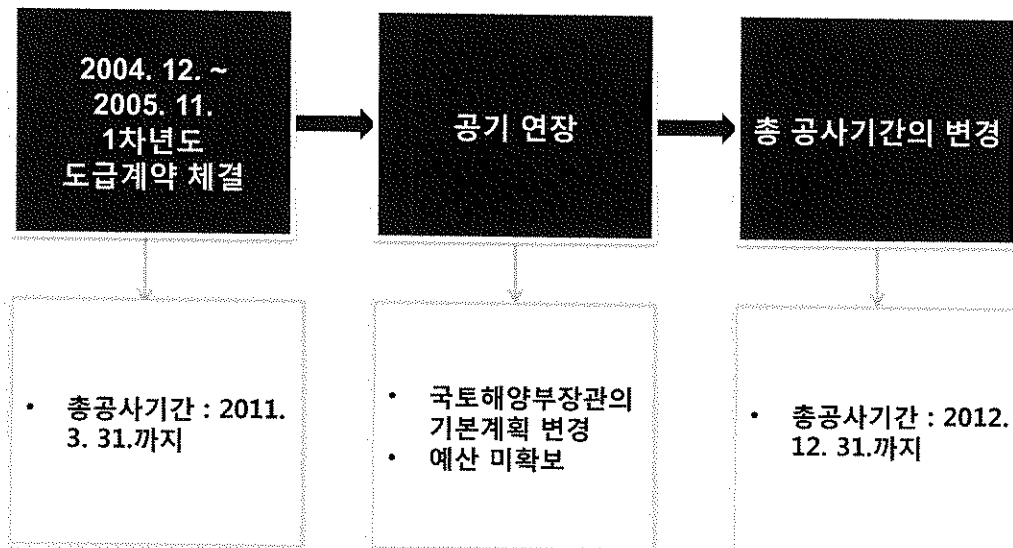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0658, 102869 판결 - 전라선 판결>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었다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약방식도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 법원은 피고(한국철도시설공단)가 연장된 공사기간 전부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지출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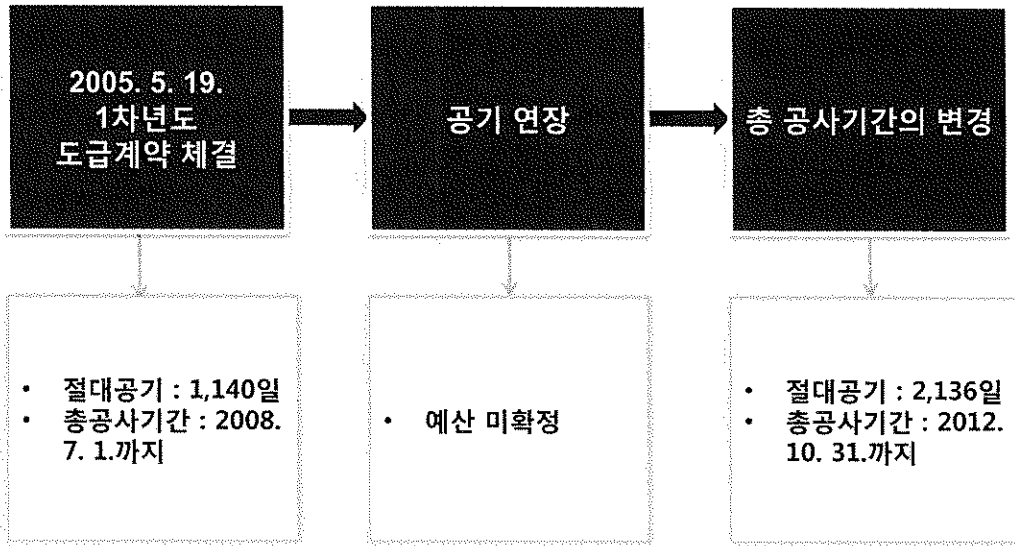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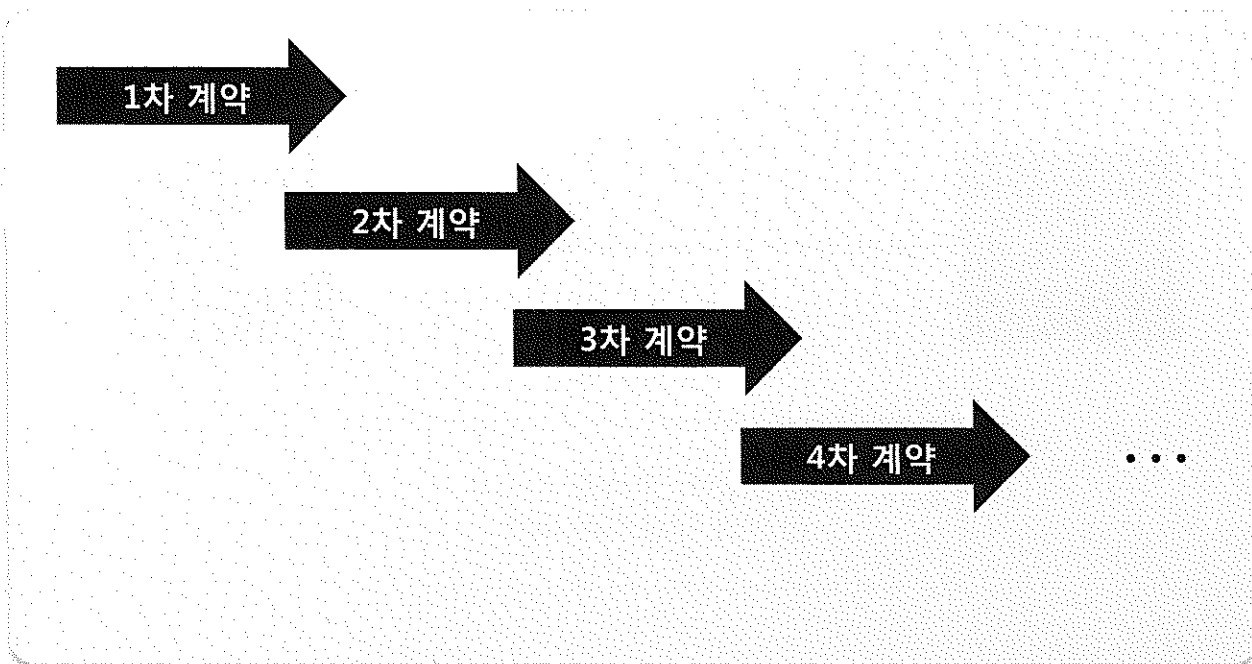
7호선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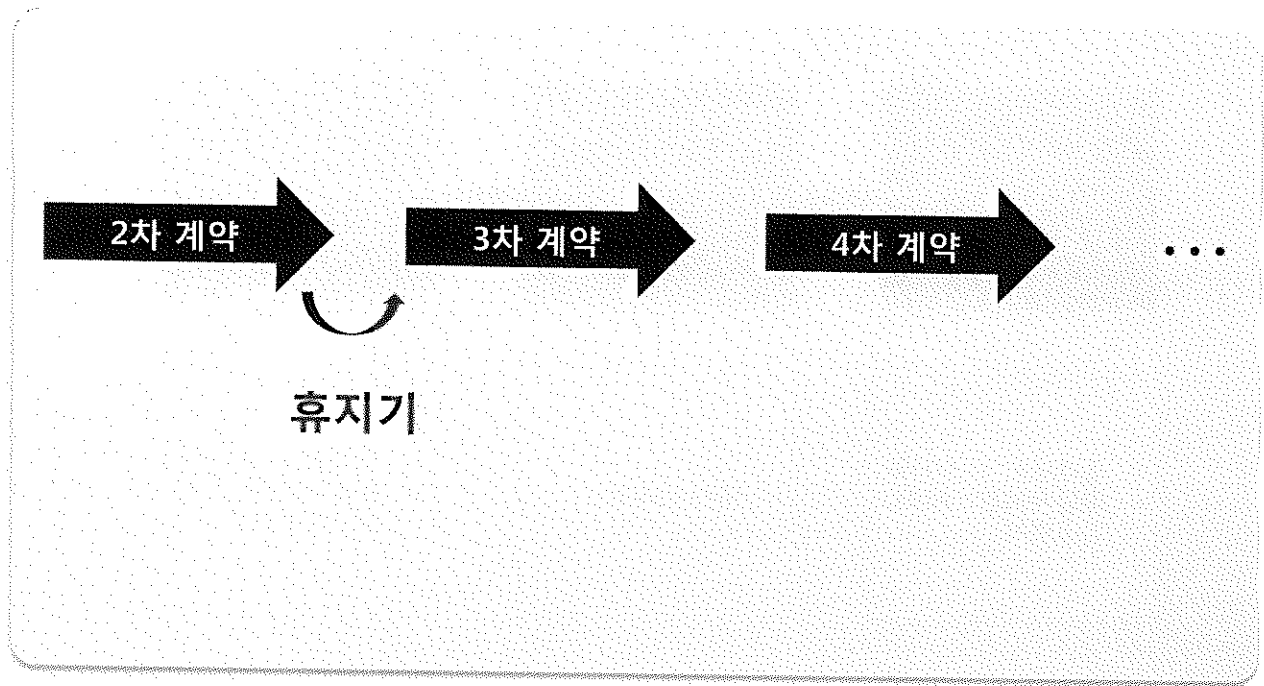
굴포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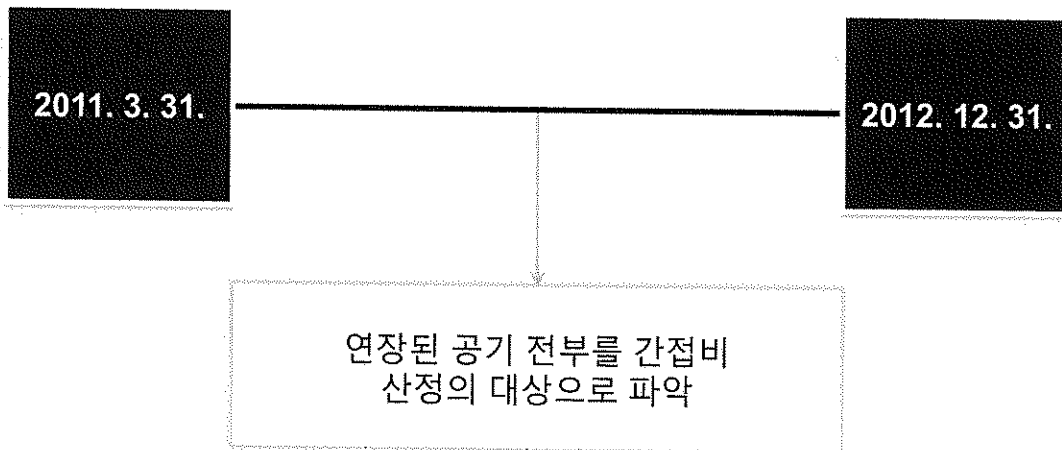
7호선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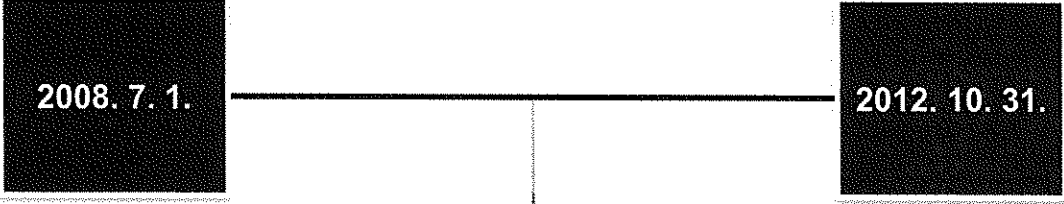
굴포천 사건



7호선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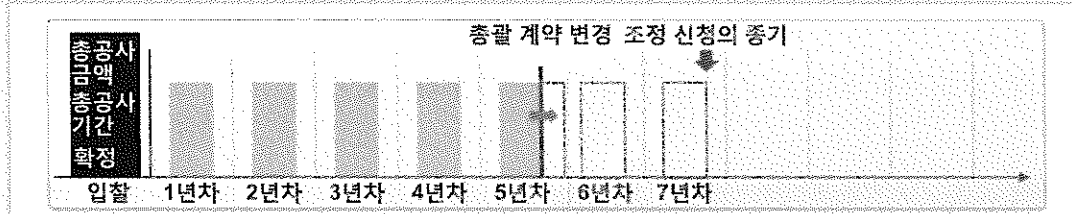
굴포천 사건



- ❖ 원고 주장 : 2008. 7. 1. 이후부터 공기 연장
- ❖ 법원의 판단
 -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일수의 합계가 최초 예정간 절대공기(1,140일)를 경과한 다음 날인 2009. 1. 13.부터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공제되어야 하는 기간 - 2009. 1. 13. 이후 휴지기
 - 공제되어야 하는 기간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부분

7호선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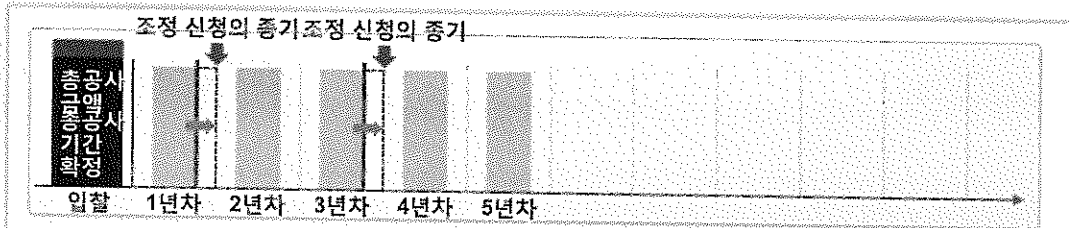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 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서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는 별개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계약 상대방들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

굴포천 사건

계약 금액 조정 신청



- ✓ 차수별 계약의 공기 연장 :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이전
- ✓ 총괄계약의 공기 연장 : 총괄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이전
- ✓ 휴지기 : 해당 휴지기 직후의 차수별 계약에 대한 준공대가 수령 이전

실무상 유의사항-현장관리의 중요성

1. 동시신청 요건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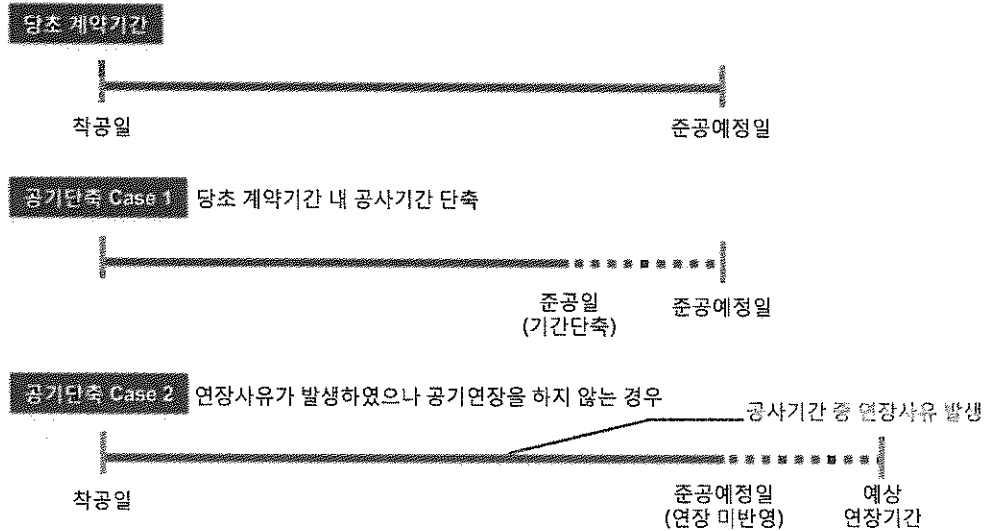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경우
- 계약기간 연장신청만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 요건 미비로 판단되는 하급심 판결 존재
- 차수별 계약, 변경계약 체결 시 첨부된 계약예규의 변천 과정도 주의

2. 준공대가 수령 전 주의!

-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사이행기간 단축 사례분석

① 공사이행기간 단축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례분석

② 공사이행기간 단축 (비용산정)

비용 산정방법 : 공기단축 Case 1, Case 2 동일

1. 증액금액 산정

- 근로시간 증가 : 직접노무비 + 추가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른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계상

※ 돌관작업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지시 근거 필요

2. 감액금액 산정

- 공사이행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 감액금액 산정 (Case2의 경우 제외)
[당초 계약금액(간접비) ÷ 계약기간] × 단축기간

3. 공기단축비용 산정 : 1.증액금액 - 2.감액금액

실무상 유의사항-현장관리의 중요성

1. 동시신청 요건 주의!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경우
- 계약기간 연장신청만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 요건 미비로 판단되는 하급심 판결 존재
- 차수별 계약, 변경계약 체결 시 첨부된 계약예규의 변천 과정도 주의

2. 준공대가 수령 전 주의!

-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지하철공사의 공기증가가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과거 1999년경 서울시 지하철 공사중 8호선 3개 공구와 5호선 2개 공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착공시 설정했던 공사기간이 준공시점에는 평균 30.2개월이 증가되었고, 그 과정에서 순수공기연장으로 공구당 발생하는 추가공사원가는 평균도급액의 약 4.2%로, 착공시 수급인이 기대한 이익인 4.5%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손창백 외 2, 지하철공사에 있어서 공기증가가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6호, 1999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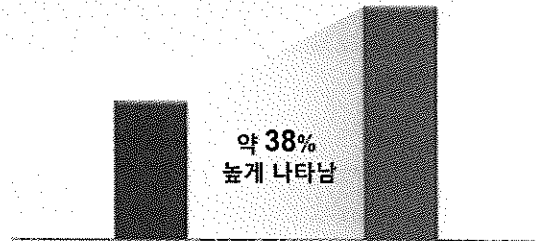
공사기간 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표 3. 손실비용 산정기준 제안

비용 항목	산정식	비고
현장관리비	실제로 지출된 간접노무비율 기준으로 산정	기존안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율 × (계약금액 ÷ 계약공기) × 지연기간	수정제안
유류노무비	∑유류노무인원 × 노임단가 × 유류일수	신규제안
유류장비비	보유장비: 손로 × 환산계수 × 지연일수 × 50%	신규제안
	임대장비: ∑지연기간중 실제로 부담한 임대비용	신규제안
생산성 저하비용	∑작업량(PL) × {단위작업비용(I) - 단위작업비용(U)}	신규제안
공기축전 비용	∑작업량(AW) × {단위작업비용(I) - 단위작업비용(U)}	신규제안
기타 손실 비용	이자: ∑미지급금액 × 연체이자율 × 미지급일수	기존안
	이윤: 기간연장에 따른 실비증가액 × 계약상 이윤율	기존안
	보험료: 간접노무비 증가액 × 계약상의 적용율	기존안
	연장수수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	기존안

(손보식 외 2, 건설공사의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실 비용 산정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2호, 2001년 2월).

국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국내규정에서 인정되는 비목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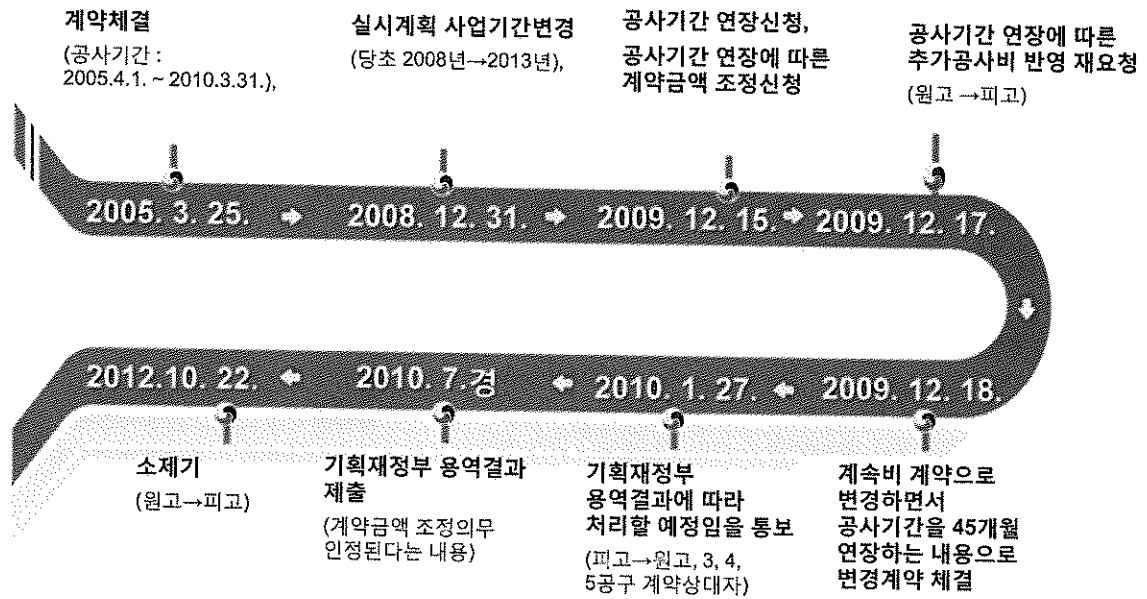
국내의 산정방법에 따른 보상비 국외의 산정방법에 따른 보상비

(이재섭, 공기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4호, 2007년 4월).

오리~수원 복선전철 6공구(2012가합21945사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1. 이 사건의 경과



한국건설
신문

판결의 주요쟁점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 평가
-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대상
- 간접비 산정방식,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적용가부
-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여부
- 차수별 계약 간의 공백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발생한 간접비의 공제여부

판결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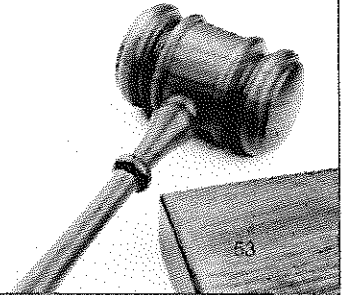
-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가 허용됨
- 계약형태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한국건설
신문

오리-수원 복선전철 4공구(2013가합565635사건)

판결의 주요쟁점

- 분쟁해결조항의 부제소합의 해당여부
- 총공사기간이 절대공기 해당 여부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계약이 "경개"에 해당 여부
- 소멸시효 항변 여부
- 설계내역서상 이윤율 적용 여부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문제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문제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문제

• 구별의 실익

-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임의해제 불가(민법 제668조)
-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상 보험사고는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공사의 미완성)이므로 일단 공사의 완성 후 발생한 하자와의 구별이 중요

⚖️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의 기준(1)

- 공사의 미완성: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
- 하자: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결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문제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문제

⚖️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의 기준(2)

- 공사가 여러 개의 부분 공사 또는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부분 공사 또는 공정의 종료에 따라 그 공사비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기성 공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공사 또는 공정의 종료와 검사의 완료로써 일단 해당 공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발견된 시공상의 흠결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봄이 상당함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문제


△ 대법원이 공사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고 있는 요소

- ① 전체 공사의 내용과 미시공된 공사의 내용, 미시공된 공사부분이 차지하는 정도와 비중
- ② 미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 ③ 미시공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귀책사유의 제공자
- ④ 도급인예의 인도 내지 도급인의 사용 여부
- ⑤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
- ⑥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명



공사의 미완성과 목적물의 하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별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위 고려요소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권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점을 유의!

3. 공공공사 분쟁 사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금융손해 청구 사례


이 사건의 쟁점 : ① 간접공사비 등 지급의무

피고의 주장

- 3차분 공사의 일시정지 기간 중 원고가 변경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 공사가 정지된 기간은 간접공사비 및 금융손해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사 수급인으로서 시공 의무만을 부담하고(설계/시공 분리 공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본 설계도서 및 변경 설계도서 작성의무는 피고 또는 책임감리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변경설계서 제출시기와 3차분 공사 정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설계/시공 분리 공사에서, 원고(시공사)가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 사건의 쟁점 : ② 간접공사비 등 채권 포기

피고의 주장

- 3차분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간접공사비 및 금융손해에 관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및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판단

- 3차분 공사의 경우 변경계약을 거치면서 계약금액이 오히려 감액되었는바, 변경계약금액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음
- 채권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 간접공사비 및 금융손해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간접공사비 및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의 쟁점 : ③ 하자보수기간 동안의 비용 공제

피고의 주장

- 공사정지 기간 중 5개월 동안은 원고가 하자보수 작업을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지출된 간접공사비는 공제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감정인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5개월(50%) 정도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여 5개월 동안 지출된 간접공사비의 50%만 인정하였음
- 원고가 시행한 공사 부분에는 미시공 부분, 잘못 시공한 부분이 있었고, 공사 진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보수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추가 공사비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공사비를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에 있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기간(5개월) 동안 지출된 간접공사비의 50%만 인정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중재 사례

이 사건 계약의 경과

총괄계약 (2010.6.15.~2013.1.29./ 1499억원)
 총괄계약변경(~2013.5.30.)

1차수 계약(2010.6.15.~2010.12.31. / 111억원)

2차수 계약(2011.1.1.~2011.12.31. / 319억원)

3차수 계약(2012.2.6.~2012.12.31. / 179억원)

3차수 변경계약(~2013.5.7.)

4차수 계약(2013.5.13.~2013.5.30. / 27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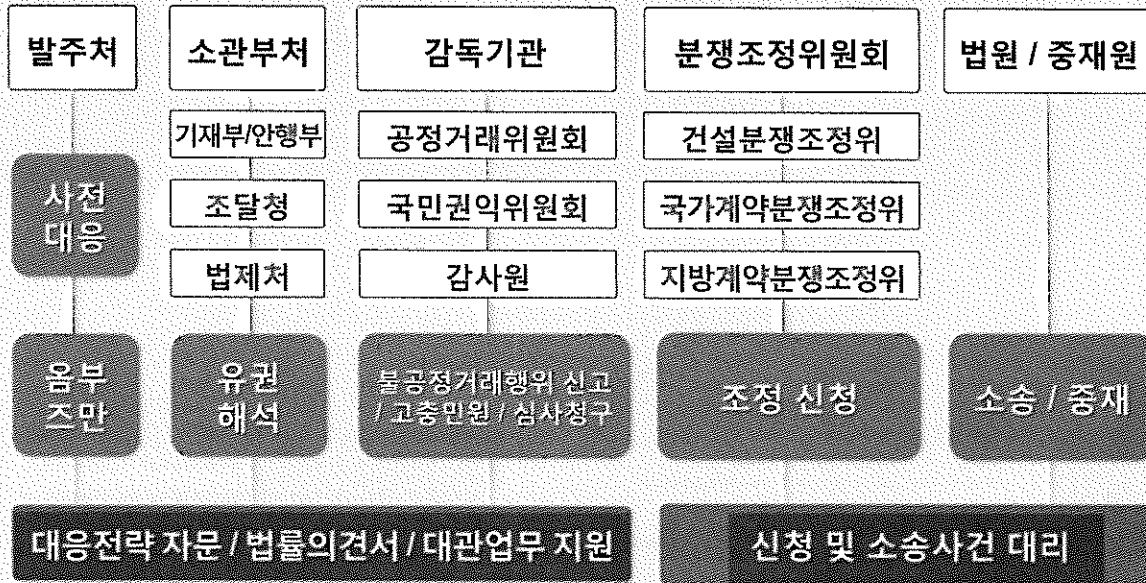
신청인들 “8개월 연장”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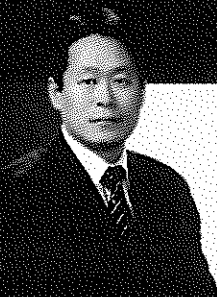
피신청인 “4개월만 인정”

대응방안

분쟁해결수단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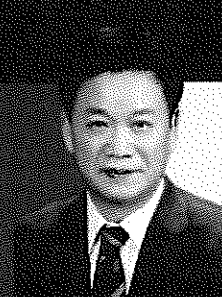


Yu Chul Jung

ycjung@yulchon.com
+82-2-528-5212

Yulchon LLC (Seoul)

318 Teheran-ro, Daechi-dong, Gangnam-gu,
Seoul 135-713, Korea



Moon Hwan Hwang

mhhwang@yulchon.com
+82-2-528-5038

Yulchon LLC (Seoul)

318 Teheran-ro, Daechi-dong, Gangnam-gu,
Seoul 135-713, Korea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2층 (대치동)
Tel: 02-528-5200 Fax: 02-528-523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8 3911 0225 Fax: +84 8 3911 0230 E-mail: vjahn@yulchon.com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4-3637-8200 Fax: +84-4-3637-8230 E-mail: vghae@yulchon.com

중국 (북경 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100190, P.R. China
Tel: +86-10-8587-0888/0768 Fax: +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

미얀마 (양곤 사무소)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94-3088-377 E-mail: ujahn@yulchon.com

러시아 (모스크바)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ysa Leb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7 495 510 5200 Fax: +7 495 510 5228 E-mail: leesty@yulchon.com